

보도시점

2024. 7. 18.(목)
브리핑 시작(14:00) 이후

배포

2024. 7. 18.(목)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

-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여 공적체계에서 보호 -
- 여러 어려움으로 출산양육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하였다. 7월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는 운영된다. 또한 위기임산부들이 상담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평소에 접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가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하였으며,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6월 말부터 1308 상담전화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 출생신고 최고: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것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이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하였다.

<위기임신 상담 등 지원>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시·도는 보건복지부와

협력 아래 민간에서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을 그 동안에도 제공하던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특히,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한다.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전화를 받도록 하여,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할 때 임산부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필요하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308 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하여,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비교적 간단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되어 있는 등 보다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정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할 수 있도록 7월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미혼모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며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소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취약 가정 직접 방문하여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151개 센터 1,053명/24.3월)

<보호출산제 절차>

이렇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①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③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④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신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임신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 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더 많은 산모와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임산부 분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산부 상담 체계가 신설되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하여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출생통보제 개요
 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3.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목록
 4. 위기임산부 상담 홍보물

담당 부서 <출생통보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최영준 (044-202-3390) 유미나 (044-202-3391)
담당 부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신옥수 (044-202-3410) 임예슬 (044-202-3429) 이길원 (044-202-3409)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이윤아 (02-2100-6341) 김성곤 (02-2100-634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 1

출생통보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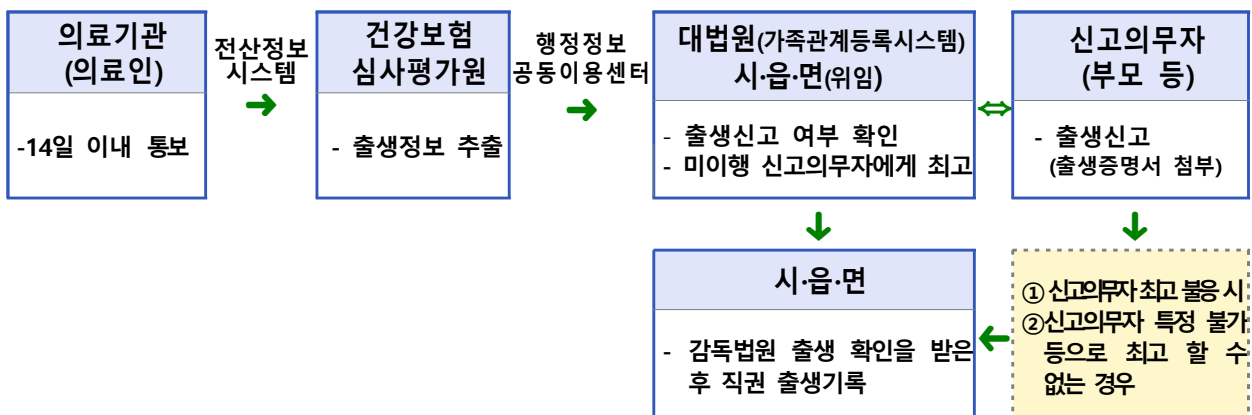
1 개요

-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월 시행 예정

2 주요 내용(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 (통보주체·기한·대상) ①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 ②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 (통보내용)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 (통보방법) ①(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②(심평원→시·읍·면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읍·면장에 통보
- (최고)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 (직권출생기록) ①최고기간(7일) 내 未신고, ②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 출생통보제 흐름도 >



1 개요

-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2 주요 사업내용

-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6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 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



붙임 3**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목록**

지역	기관명	주소
서울특별시	애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부산광역시	마리아모성원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마리아모성원
대구광역시	가톨릭푸름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인천광역시	인천자모원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50번길 23-2(경동)
광주광역시	엔젤하우스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대전자모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울산광역시	미혼모의집 물푸레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경기도	광명 아우름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강원특별자치도	마리아의 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충청북도	새생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충청남도	구세군 아름드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 (지번 : 율량동 120)
전북특별자치도	기쁨의하우스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전라남도	성모의 집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경상북도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경상남도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제주특별자치도	애서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 30

붙임 4

위기임산부 상담 홍보물과 주요 배포처

1 주요 배포처

구분	개소 수	협조
약국	24,832개	약사회
산부인과	544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족센터	244개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센터	222개	여성가족부
중·고등학교 상담실	중학교 3,292개 고등학교 2,427개	교육부
대학교 상담센터	409개	대학교육협의회

2 상담 홍보물



[대] 이미지형(160x160mm, 도무송형)



[중] 일러스트형(130x130mm, 도무송형)



[소] 일러스트형(90x90mm, 도무송형)



[대] 이미지형(160x160mm, 도무송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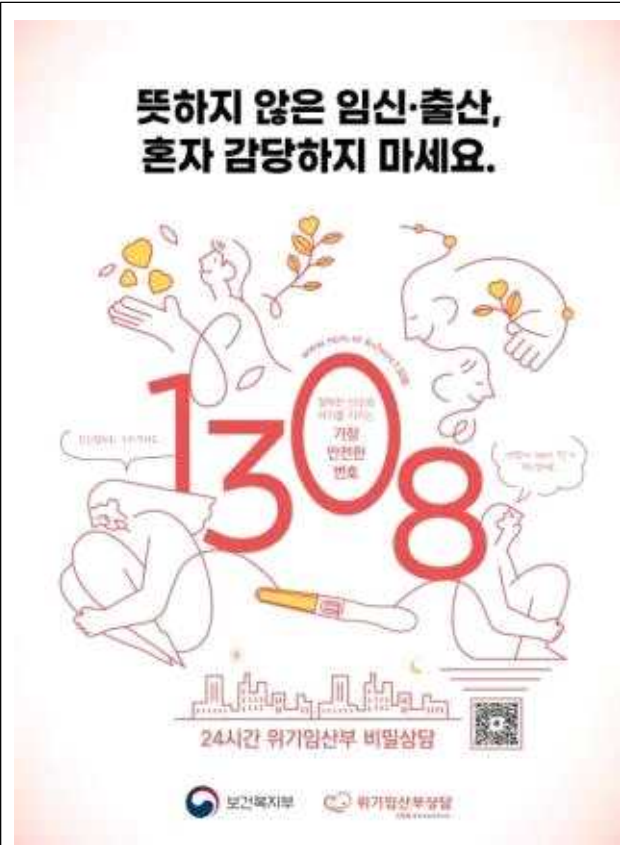


[중] 이미지형(130x130mm, 도무송형)



[소] 이미지형(90x90mm, 도무송형)

스티커 2종 대중소



포스터·리플렛 앞면 일러스트 형



포스터·리플렛 앞면 실사이미지 형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위기임산부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대상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위기임산부

지원내용

<p>24시간 상담 서비스</p> <p>전문 상담원 배치</p> <p>맞춤형 상담</p> <p>100% 비밀 상담</p>	<p>긴급상황 시 방문·지원</p> <p>긴급 상황 시 현장지원</p> <p>일시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p>	<p>맞춤형 지원 연계</p> <p>임신지원연계</p> <p>출산지원연계</p> <p>양육지원연계</p>
--	---	---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

리플렛 뒷면 1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위기임산부 맞춤형 상담서비스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문 상담원 배치
- 맞춤형 상담(오리발, 문어안, 전화, 라면)
- 100% 비밀 상담

긴급상황 시 방문·지원

- 긴급 상황 시 현장지원 (응급방안, 책, 휴리스 등)
- 일시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맞춤형 지원 연계

- 임신지원연계(임산 건강 건강관리 지원 등)
- 출산지원연계(출산 진료비 지원, 산후조리관 지원 등)
- 양육지원연계(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

리플렛 뒷면 2